

	<h1>인권헌장</h1>	금문산업(주)
제정일: 2022-11-01		개정차수: 2

인권헌장(Human rights policy)

1. 제정목적

금문산업(주)은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사업적 성공을 위해,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본 인권헌장을 선언한다. 금문산업(주)은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핵심협약, OECD 실사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영국 현대판 노예방지법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제1조. 인권헌장 적용범위

본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금문산업(주) 임직원(임원과 직원, 비정규직 포함)으로서 국내·외 법인 및 사내 협력사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한, 금문산업(주) 임직원은 공급자 및 판매·서비스 조직을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문산업(주)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2조. 인권 리스크 관리체계

금문산업(주) 모든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본 인권헌장에 따라 인권경영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공유한다. 금문산업(주)의 인권경영 담당조직 등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인권 리스크 관리체계를 이행하며, 인권관리 절차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해당 관리체계를 개정한다.

2. 기본원칙

제1조. 차별금지

금문산업(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임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사



제정일: 2022-11-01

인권헌장

금문산업(주)

개정차수: 2

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임신 및 출산 등의 고용과 관련해 차별하지 않으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제2조. 근로조건 준수

금문산업(주)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 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제3조. 인도적 대우

금문산업(주)는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4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금문산업(주)는 본 인권헌장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 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제5조.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 아동노동의 금지

금문산업(주)는 모든 임직원에게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분증 또는 사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인신매매,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연소자에 대해서는 근로로 인하여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제6조. 산업안전 보장

금문산업(주)는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제7조. 지역주민 인권보호

금문산업(주)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 보전에 대한 권리, 거주 자유를 보호한다.

제8조. 고객 인권보호

금문산업(주)의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제정일: 2022-11-01

인권헌장

금문산업(주)

개정차수: 2

개정 이력

차수	제(개)정 일자	시행일자	주요 개정 내용
1	2022-11-01	2022-11-01	초도 제정
2	2023-08-10	2023-08-10	2.기본원칙 제 1 조, 제 5 조 문구삽입
3			